

## 추가 의견서

본인은 국회의 절차와 내용에서의 불법적 법안 상정에 대해 12월 16일 나라에 대한 걱정과 우려로 국회를 찾은 순수한 국민을 자유민주사회에서 합당한 권리와 그에 충분한 근거가 있음에도 편파적 일방적으로 폭도로 규정하는 언론과 국회에 부당함을 느끼고 12월 17일 정당과 국민으로부터 국회의 상황과 의견을 듣고자 국회를 찾았고 기준과 제도에 대한 고지없이 달라지는 출입기준과 편파적 이유로 출입이 되지 않는 것은 국회사무처의 정당한 기준에 의하지 않은 권력남용의 소지라고 인지되었고 또한 중립적이어야 할 경찰이 스스로 권한을 축소하며 비독립적이고 비민주적이고 편파적인 부당한 행정을 하였기에 국민 한사람의 권리로 이에 개선할 법을 경찰청에 문의한 바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행정, 업무와 역할 미숙지, 해당 청 별로 다른 고지 내용, 앞뒤 다른 얘기로 회피일관이었고 그 역할의 청문 감사실에서 고소 외에 방법이 없다고 하여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회를 감시할 권한이 있고 국회의원을 검증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민주적 법과 제도내에서 국민으로서의 권익을 보호할 의무와 권한이 있습니다.

17일 국회방문시 경찰과 국회사무처에서 오신분이 말씀하신 사항은 원래 국민에게 개방되나 오늘날 국회사무처의 지시로 출입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원래 자유민주주의의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곳이며 국민에게 개방되는 곳이기에 이해관계를 떠나 나라를 걱정하는 정당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국민의 목소리가 이해관계 투성의 비민주적 국회의 불법보다 응당 더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계 없는 많은 국민이 국회를 찾은 이유는 그만큼 국회가 행한 절차와 내용에서 잘못을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설득과 타협하는 곳이지 4+1의 이해관계로 야합하여 반대 정당과 의견조율없이 법을 상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반대 정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충분히 설득해야 하는 것이 선진 국회의 모습인데 절차와 방법에서 후진화하며 선진화법을 악용하는 것이 무슨 선진화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경찰이 폭동이 아닌 이상 어떤 경우라도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불법의 국회의 행태에서 그 반대정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보호해야 함에도 비민주적이고 편파적으로 국민에게 제도와 기준의 고지없이 잘못된 행정을

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성장해온 본인의 보편과 상식입니다.

국회와 국회사무처가 반대정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비민주적인 방법과 경찰을 동원한 무력으로 자유민주적 권한에 역행하는 일방적 국회행정을 펼친다면 그것이 공산국가이고 국회를 무력으로 점거하고 벌이는 국민과 반대정당에 대한 폭정이라 생각합니다. 경찰은 국회사무처의 지시를 따르는 곳이 아닙니다. 민주적이고 선진적 방법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며 반대정당과 국민을 탄압하는 국회의 무력과 폭정에서 자유롭게 반대정당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고 국회에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는 국민의 신체와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경찰의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관련 국민이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공론화 과정과 민주적 전문적 토론과정을 거쳤는지요?

상정한 법안에 대한 국회의 행동에서 국민에 대한 민주적 선진적 설득과 타협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4+1에 의한 밀실 야합뿐이기에 많은 사회적 많은 문제제기가 있고 이해관계없이 오롯이 나라를 걱정하는 순수한 국민은 법과 제도를 허물고 벌이는 공산주의적 발상의 비민주적 행태에 민주적인 방법으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자유민주주의의 권리로 국회를 찾은 것입니다.

민주적 국가에서 정당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야 하고 국민의 문제제기에 정당하다면 국민을 합리성으로 설득하고 그렇지 않다면 비합리적이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법안에 대해 개선과 개정하는 것이 국회와 정당의 본분입니다. 많은 위선과 잘못이 수면위로 올라와 있는 정권을 견제해야 함에도 누구라도 쉽게 그것을 덮고자 벌이는 야합과 독재화 음모 공산주의적 청산의 도구로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반대의견에 대해 만약 법안을 상정하는 것이 진정 정당하다면 정당한 절차와 방법, 합리적 근거로 더욱 국민을 설득 해야 했습니다.

야당과 여러 전문가, 많은 깨어있는 국민의 여론은 상정한 법안이 삼권분립과 평등권의 대한민국 국가기조를 흔들고 헌법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한 그 법은 그들의 취지와 다르게 기존의 잘못된 독재적 정책과정과 사례를 통해 일반국민이 보기에 불보는 뻔히 부정부패를 유발할 수 밖에 없고 반대세력을 축출할 독재적 남용을 제어할 어떤 기준조차 없는 미개하고 후진적이며 불공정한 법이라고 생각하기에 민주주의에 역행

하는 법에 대해 민주적인 방법으로 정당하게 표현하는 것이 국민이 할 수 있는 의사표현인바 이를 폭도로 규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체제에 위배하여 폭동을 일으킨 자를 사전적 의미의 폭도라 하면 근거와 논리로 합리적 문제제기를 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이 폭도인가요?

아니면 체제를 위협하는 법안상정에 대해 비민주적으로 합리적 설득과 타협 없이 국회법과 절차를 허물고 경찰과 국회사무처를 동원한 무력으로 국회를 점거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 폭도인가요? 어떤 것이 폭도의 의미에 가까운지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바랍니다.

국회의 질서유지는 진정 폭도들이었을 때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체제가 위협당하는 불순한 법의 상정을 막으려는 많은 국민의 민주적 표현은 애국이지 폭도가 아니며 민주적 사회에서 이에 대해 설득과 설명없이 반대 정당과 국민의 국회이용의 권리를 제한하고 민주적 표현과 목소리를 경찰무장과 무력으로 억압하고 원천 봉쇄하는 것은 비민주적인 사안으로 국회 권한 외의 국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없는 잘못된 불순행정입니다.

또한 저는 반대정당의 활동과 국민의 국회이용의 권리가 불허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단순한 국회사무처의 지시에 따라 경찰의 권한을 스스로 축소하며 독립과 중립성을 지켜지 않은 경찰도 시대착오적 행정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으로 경찰의 중립을 요구하고자 112에 국회출입관련 신고를 하였고 이에 출동을 얘기하고도 아무 고지 없이 출동하지 않는 것은 경찰의 출동매뉴얼과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바 관련 사항에 대한 중립적 독립적 민주적 선진적 경찰직무에 문제점이 없는지 잘못된 대응은 없는지 안일하게 생각한 기본 풍토는 없는지 경찰내부에서의 자체점토와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회 출입에 대한 권한을 남용한 책임자에 대한 조사와 경찰 직무에서의 잘못된 대응은 없었는지 헌법의 가치 아래 공정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조사가 되어 관습적 풍토가 있다면 개선되어 더 나은 국회와 경찰의 행정에 민주적 개혁과 변화가 있음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KBS 공영노조는 성명을 통해 지상파에서 4+1의 국회의 절차와 내용의 불법에 대해 보도하지 않으며 선거법, 공수처법 반대를 외친 국민들이 폭동들을 일으킨 것처럼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애국국민의 민주적 표현을 폭도

라 함에 비판적 성명을 하였습니다. 저도 잘못된 언론보도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경찰의 출동문자입니다. 경찰은 출동도 미출동에 대한 사전 고지도 없었습니다. 매뉴얼과 시스템 체계의 문제는 없는지 검토 바랍니다.



2019년 12월 17일 화요일



[Web발신]  
[2019-12-17 13:49:30](#)에  
신고가접수되어 지금  
여의도지구대경찰관이  
출동중입니다.  
-서울청112-

MMS  
오후 1:49